

의안번호	2201813
의 퇴 인	문정복 의원
회 답 일	2023.08.14.
추계번호	24C199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¹⁾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0억 9,800만원, 2030년 131억 3,300만원 등 5년간 (2026~2030년) 총 630억 6,900만원(연평균 126억 1,400만원)으로 추계

[표 1]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학교급식 대상 등 (안 제4조 등)	12,098	12,352	12,611	12,876	13,133	63,069	12,614

- 주1) 급식에 관한 경비 중 '급식시설·설비비'를 제외하고, '식품비 및 운영비'만을 대상으로 함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급식에 대한 기존 지원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시·도 등의 기존 지원금 예산이 전액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로 사용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감소할 수 있음
 3)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대안교육기관현황(2023.4.1.)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며, 기관수 및 학생수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기관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 교육기관	의무규정

-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학교급식 대상)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급식에 관한 경비²⁾를 지원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을 추계
- 급식경비는 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과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잔여 비용은 보호자 및 학교 발전기금 등을 통해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³⁾
 - 급식경비 지원 체계는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교육부의 「2023학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른 부담주체별 급식 소요 경비 현황을 준용함
 - “식품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 단가는 교육부의 「2023학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른 소요경비를 급식 학생 수로 나누어 학생 1명당 지원 단가를 산출한 뒤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 일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경우 식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도별로 지원금액 및 단가, 대상 등이 상이하여 이를 추계에 반영하기 어려움⁴⁾. 이에 기존에 지원되었던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결과값을 도출하였으며, 기존 지원금이 개정안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경비로 전액 사용될 경우 추계결과는 감소할 수 있음

2)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학교급식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므로, 제8조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 대안교육기관에도 급식에 관한 경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함

4)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부산,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시·도)와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광주교육청, 울산교육청, 세종교육청(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다만, 지역별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주체와 지원단가가 다르고 지원대상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의 일종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며, 교육부 자료에서는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표기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본 추계서 작성을 위한 자료요청에는 미지원으로 회신하는 등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액을 일률적으로 차감하는데에 한계가 있어 본 추계서에서는 기존 지원금을 제외하고 추계하였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수 및 학생 수는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의 기관수와 학생 수를 적용하되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3.4.기준 대안교육기관은 217개이며 학생수는 총 9,560명임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만 7~18세 인구는 추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상 재학생 수의 변동을 이에 연계시키기 어렵고 재학생 수의 변동에 대한 합리적 가정이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기관수 및 학생수가 추계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교육부의 「2023학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와 자치단체지원금 부담비율이 각각 70.6%와 21.7%이므로 이를 합산한 92.3%를 전체 소요경비 중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서 지출하여야 할 재정부담분으로 산정함
 - 교육부의 「2023학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르면, ①교육비특별회계, ②자치단체지원금, ③보호자부담금, ④기타 발전기금 등에서 급식 소요경비를 분담하고 있음⁵⁾
 -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 70.6%와 자치단체지원금 21.7%를 합산한 92.3%를 재정부담분으로 산정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과 국회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가정

5) 부담주체별 급식 소요경비

부담주체	부담금액	비율
교육비특별회계	5조 4,747억원	(70.6%)
자치단체지원금	1조 6,878억원	(21.7%)
보호자부담금	3,704억원	(4.8%)
발전기금/기타	2,249억원	(2.9%)
계	7조 831억원	(100.0%)

자료: 2023학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교육부)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식품비 및 운영비) 중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임
 - 식품비 및 운영비는 지원대상 학생수(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수)에 학생 1명당 지원단가를 곱하고 교육비특별회계 및 자치단체지원금 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출
 - 식품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 단가는 교육부의 「2023학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른 ‘식품비와 운영비 소요경비’를 급식 대상 학생 수로 나누어 학생 1명당 지원 단가를 산출한 뒤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 교육비특별회계 부담률과 자치단체지원금 부담률은 「2023학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른 부담률을 적용하고,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지원대상 학생수는 9,560명, 1명당 급식경비 지원단가는 2025년도 기준 1,371,000원,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부담률은 92.3%로 산출함
 - 1인당 급식경비 지원단가는 「2023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서 도출된 1,279,347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 재정부담률은 교육부의 「2023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70.6%)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부담률(21.7%)을 합산한 92.3%를 적용하고,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이에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급식에 따른 경비를 제공하는데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120억 9,800만원, 2030년 131억 3,300만원 등 5년간(2026~2030년) 총 630억 6,900만원으로 추계

[표 2] 대안교육기관 급식실시 관련 추가재정소요 :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지원대상 학생수(A)	9,560	9,560	9,560	9,560	9,560	—	9,560
급식경비 지원단가(B)	1.4	1.4	1.4	1.5	1.5	—	1.4
재정부담률(C)	92.3%	92.3%	92.3%	92.3%	92.3%	—	92.3%
계(A×B×C)	12,098	12,352	12,611	12,876	13,133	63,069	12,6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운영비’를 대상으로 추계한 결과임
- 일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급식에 대한 기존 지원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존 예산이 전액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로 사용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감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